#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1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권성동

조은희 · 김기웅 · 이달희

이상휘 · 서일준 · 김선교

신동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

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 주요내용

-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

관련 감면 등) ① ----------<u>20</u>28년 <u>1</u>2월 31일

개

정 안

- 1.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 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 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u>202</u>
8년 12월 31일	<u>]</u>
·.	